2024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 증명서류 : 기본내역 [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]

(소득 발생기간 : 2024년 01 ~ 06월)

■ 본인 인적사항

성 명	주민등록번호
김주연	990621-*****

■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

관 계	성 명	주민등록번호	소득기준 초과
직계존속(부모,조부모 등)	양정숙	660505-****	Υ

- 1. 조회일 현재 본인에게 자료제공 동의한 부양가족 중 상반기(1월~6월) 소득금액이 100만원(총급여액 500만원)을 초과한 대상자만 표시됩니다.
- 2. 상반기 소득금액은 근로·사업·기타·퇴직·양도(주식 제외) 소득의 합계액입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건강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4년 11,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김주연	990621-*****	

■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내역

(단위:원)

의뱀	보수월액(고지금액)	소득월액(납부금액)		
월별	건강보험료①	장기요양보험료②	건강보험료③	장기요양보험료④	
01월	0	0	0	0	
02월	0	0	0	0	
03월	0	0	0	0	
04월	0	0	0	0	
05월	0	0	0	0	
06월	0	0	0	0	
07월	0	0	0	0	
08월	0	0	0	0	
09월	0	0	0	0	
10월	0	0	0	0	
11월	0	0	0	0	
12월	81,530	10,550	0	0	
연말정산	0	0			
합계	81,530	10,550	0	0	
총합계	총합계 92,08				

1. 보수월액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
-2-

2. 소득월액 보험료 :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 증명서류:기본내역 [고용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4년 11,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민등록번호
김주연	990621-*****

■ 고용보험료 고지내역

(단위:원)

월별	고지금액
01월	0
02월	0
03월	0
04월	0
05월	0
06월	0
07월	0
08월	0
09월	0
10월	0
11월	5,220
12월	25,920
합계	31,140

- 1. 고지금액: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실제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급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2.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3. 건설업, 벌목업 사업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국민연금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4년 01~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김주연	990621-*****	

■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(단위:원)

월별	직장가입자 고지금액	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
01월	0	0
02월	0	0
03월	0	0
04월	0	0
05월	0	0
06월	0	0
07월	0	0
08월	0	0
09월	0	0
10월	0	0
11월	0	0
12월	103,500	0
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	0	
추납보험료 납부금액		0
실업크레딧 납부금액		0
합계	103,500	0
	총합계	103,500

- 1. 직장가입자 고지금액: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※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,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2. 지역가입자·추납보험료·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24년 11,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양정숙	660505-*****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	류			
종류	사업자반	호	증권번호		주피보험자	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	종피보험자2	(수익자)	종피보험자3(수익자)	
	라이나생명보험(주)		무배당THE간편한메디칼수술보 험(
보장성	104-81-85673		303587**	***	660505-*****	양정숙	123,780
	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		무) 하나로건강II2				
보장성	711-87-00	663	652869****		660505-****	양정숙	23,980
	에이아이에이생명5	보험 주식회사	(무)원스	톱II 3			
보장성	711-87-00663		604364**	***	660505-****	양정숙	24,720
	에이아이에이생명5	보험 주식회사	(무)원스	톱II 3			
보장성	711-87-00663		604323****		660505-****	양정숙	22,400
	인별합계금액		194,88		194,880		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24년 11,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김주연	990621-*****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3-58-00*	부****	일반	3,400
5-32-00*	오****	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	5,0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3,4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5,00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8,4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6세 이하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부양가족(700만원)
 -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

일련번호: 20250116-88904636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6-

2024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24년 11,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주연	990621-*****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
958,250	1,054,06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82,000	0	130,850	0	212,85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일반	82,000
신용카드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대중교통	77,400
신용카드	375-88-00197	주식회사 카카오뱅크	대중교통	53,450
인별합	계금액			212,850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 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4년 11,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주연	990621-*****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
8,729,247	10,174,538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1,904,890	1,000	0	0	1,905,89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524-86-01528	네이버파이낸셜 주식 회사	일반	0
직불카드 등	104-86-39742	농협은행 주식회사	일반	0
직불카드 등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일반	1,004,230
직불카드 등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전통시장	0
직불카드 등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대중교통	0
직불카드 등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도서공연등	0
직불카드 등	375-88-00197	주식회사 카카오뱅크	일반	765,960
직불카드 등	375-88-00197	주식회사 카카오뱅크	전통시장	1,000
직불카드 등	375-88-00197	주식회사 카카오뱅크	대중교통	0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250116-88904636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8-

2024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4년 11,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주연	990621-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527-88-00686	주식회사 카카오페이	일반	134,700
직불카드 등	109-81-53365	코나아이 (주)	일반	0
직불카드 등	109-81-53365	코나아이 (주)	전통시장	0
직불카드 등	462-86-01671	토스뱅크 주식회사	일반	0
직불카드 등	201-81-02819	(주)우리은행	일반	0
인	별합계금액	1,909		1,905,890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: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4년 11,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주연	990621-*****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
696,350	496,268

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 등	주택임차료 거래	합계금액
101,400	0	0	0	0	101,400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-10-
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홈택스> 상담·불복·제보>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미발급/발급거부>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- 2.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(월세)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: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4년 11,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김주연	990621-*****		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

(단위:원)

		월별 공제대상금액				
78	조 근	01월	02월	03월	04월	고레디사그애
구분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09월	10월	11월	12월	
	일반거래	0	0	0	0	
현금영수증		0	0	0	0	101,400
		0	0	101,400	0	
	도서.공연비등거 래	0	0	0	0	0
현금영수증		0	0	0	0	
		0	0	0	0	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-11-
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홈택스> 상담·불복·제보>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미발급/발급거부>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- 2.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(월세)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